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 폐지에 따라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5조 제2항)
 -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변경(안 제15조 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
-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참고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3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
 -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
 - ▶ 15개 자치구 : 30일
 - ▶ 서울시 및 1개 자치구 : 25일
 - ▶ 9개 자치구 : 20일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